

##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공시송달 공고

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(이하 '구직자취업촉진법')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
2026. 6. 10.

###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



1. 건 명: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철회 처분 공시송달
2. 근 거: 구직자취업촉진법 제12조제4항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성명 (생년월일)	주소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 내용		송달 불능 사유
			처분 사유	처분의 내용	
김○영 (89.04.07.)	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운정로 (이하 생략)	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알림	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에 따른 초기상담 진행을 위해 수차례 전화 연락 및 출석 통지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한 상담일('26.4.24./5.4.) 에 방문하지 않아 수급자격 인정을 철회함	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	폐문부재

4. 공고기간: 2026. 6. 10. ~ 2026. 6. 24.(15일간)
5. 의견제출방법: 공고기간 내 직접 방문(부산고용센터 2층 국민취업지원과) 또는 팩스(051-719-4513)
6. 기타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국민취업지원과 김현주(Tel. 051-860-1960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